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2.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및 제출자 : 2006년 2월 13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2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6년 2월 20일

제1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결정사항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용자금은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이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상환기한을 1회에서 2회로 연장하여 상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립기반확립과 소득수준향상을 도모
- 수혜범위를 한정지으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문구인 영세민을 삭제

나.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제2항(용자대상)
용자대상 자금 명칭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 조례 제9조제2항(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상환기한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 를 1회 1년이내로 하되 2회로,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 입법예고 : 2006. 1. 19 ~ 2006. 2. 8

-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찬재)

- 본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자에 대한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영세민이라는 부적절한 문구를 삭제하고, 상환기한 연장기간을 1년 이내 1회에서 1년 이내 2회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 개정안 제3조제2항, 영세민 용어 삭제 안은 영세민이라는 용어가 계층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어 오래전부터 저소득 주민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연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 개정안 제9조제2항, 상환기간 연장횟수 변경안은 서울시 자치구중 성동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가 1회 연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경우 연장 신청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동 조문의 “1년 이내로 하되 1회”는 연장기간의 불명확 등으로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②항의 연장기간은 1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한다”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요지

- 용자금 상환기한 연장기간은 1회 1년이내로 하되 2회를 1년의 기간으로 2회로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9조제2항 상환기한 연장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하되 2회”를 “1년의 기간으로 2회”로 수정

5. 審査結果 : 修正案 可決